신혼부부 특별공급 안내문

<table>
<tr><th>구분</th><th>내용</th></tr>
<tr><td>대상 및 자격</td><td>
-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아래 조건을 모두 갖춘 자
① 모집공고일 현재 서울시 및 수도권(경기/인천) 거주 ② 혼인기간 7년 이내(혼인신고일 기준, 재혼 포함)
③ 「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」에서 정하는 소득기준 충족
④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기준(140%)을 초과하나 부동산가액기준(3억3,100만원) 이하에 해당하는 자
⑤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이상 지역별/면적별 예치금 이상 ⑥ 무주택세대 구성원
※ 단, 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~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부부가 모두 무주택이어야 함.
→ 2018.12.11. 이전 기존 소유주택을 처분하여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한 경우 신혼부부 특별공급 특례에 따라 2순위 청약 가능
</td></tr>
<tr><td>당첨자 선정기준 및 유의사항</td><td>
<table>
<tr><th>구분</th><th>내용</th></tr>
<tr><td>공급기준</td><td>① 우선공급(50%) :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의 100% (배우자의 소득이 있는 경우 120%) 이하인 자
② 일반공급(20%) :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의 140% (배우자의 소득이 있는 경우 160%) 이하인 자
③ 추첨공급(30%) : 공급 후 남은 물량(30%)은 ①, ②낙첨자 + 추첨제 청약자(소득기준은 초과하나 부동산가액기준 충족자)에게 공급</td></tr>
<tr><td>경쟁 시 우선순위</td><td>- 우선공급 및 일반공급[소득기준] 내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
① 1순위 :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기간 중 출산한 자녀가 있는 자(임신, 입양 포함)
※ 재혼일 경우 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기간 내 임신, 출산, 입양 자녀의 경우만 해당
※ 현재 배우자와 혼인신고일 이전 출산한 자녀가 있는 경우도 포함
② 2순위 : 1순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 → 무자녀 또는 2018.12.11. 이전 기존 소유주택을 처분하고 무주택기간이 2년 경과한 자
- 순위 내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① 해당 주택건설지역(서울시) 거주자 ② 미성년 자녀(태아 포함) 수가 많은 자
※ 재혼인 경우 이전 배우자와의 혼인관계에서 출산·입양한 미성년 자녀(청약신청자의 전혼 자녀)를 포함하되, 그 자녀가 신청자 또는 세대 분리 된 재혼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 상에 등재되어야 함.
※ 재혼 배우자의 친자녀(전혼 배우자와의 자녀)는 청약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만 해당
③ 미성년 자녀(태아 포함) 수가 같은 경우 추첨으로 선정
- 추첨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순위에 상관없이 해당 주택건설지역(서울시) 거주자에게 우선공급하고,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의 방법에 따름</td></tr>
</table>

• 유의사항
-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 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(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)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,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,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
- 출산은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표 등본으로 판단하며, 임신의 경우 임신진단서, 입양의 경우 입양관계증명서(양자및 친양자의 경우 입양관계증명서 상 입양신고일이 적용됨) 등으로 확인합니다.
- 임신의 경우 계약서류 제출 시 출산 관련 자료(출생증명서, 유산·낙태 관련 진단서, 임신 지속 시 임신진단서)를 추가로 제출해야 하며 서류 미제출, 허위 임신, 불법낙태의 경우 당첨 취소 및 부적격 처리되어 향후 신청이 제한됩니다.(출산 관련자료는 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)
-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에는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합니다.
- 소형·저가주택 등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합니다.(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 제53조 제9호 미적용)
- 기타 본 안내문 상에 표시되지 않은 내용에 대해서는 '신혼부부 특별공급 운용지침'및 관련 법령에 따릅니다.
</td></tr>
<tr><td>소득산정 기준</td><td>
•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·자산기준
<table>
<tr><th colspan="3" rowspan="2">공급유형</th><th rowspan="2">구분</th><th colspan="6">2022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기준 (2023년 적용)</th></tr>
<tr><th>3인 이하</th><th>4인</th><th>5인</th><th>6인</th><th>7인</th><th>8인</th></tr>
<tr><td rowspan="4">소득기준구분</td><td rowspan="2">우선공급 (기준소득, 50%)</td><td>배우자 소득이 없는 경우</td><td>100% 이하</td><td>~6,509,452원</td><td>~7,622,056원</td><td>~8,040,492원</td><td>~8,701,639원</td><td>~9,362,786원</td><td>~10,023,933원</td></tr>
<tr><td>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</td><td>100% 초과 ~120% 이하</td><td>6,509,453원 ~7,811,342원</td><td>7,622,057원 ~9,146,467원</td><td>8,040,493원 ~9,648,590원</td><td>8,701,640원 ~10,441,967원</td><td>9,362,787원 ~11,235,343원</td><td>10,023,934원 ~12,028,720원</td></tr>
<tr><td rowspan="2">일반공급 (상위소득, 20%)</td><td>배우자 소득이 없는 경우</td><td>100% 초과 ~140% 이하</td><td>6,509,453원 ~9,113,233원</td><td>7,622,057원 ~10,670,878원</td><td>8,040,493원 ~11,256,689원</td><td>8,701,640원 ~12,182,295원</td><td>9,362,787원 ~13,107,900원</td><td>10,023,934원 ~14,033,506원</td></tr>
<tr><td>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</td><td>120% 초과 ~160% 이하</td><td>7,811,343원 ~10,415,123원</td><td>9,146,468원 ~12,195,290원</td><td>9,648,591원 ~12,864,787원</td><td>10,441,968원 ~13,922,622원</td><td>11,235,344원 ~14,980,458원</td><td>12,028,721원 ~16,038,293원</td></tr>
<tr><td colspan="2" rowspan="2">소득기준 초과/ 자산기준 충족 (추첨제, 30%)</td><td>배우자 소득이 없는 경우</td><td>140% 초과, 부동산가액 (3.31억원) 충족</td><td>9,113,234원~</td><td>10,670,879원~</td><td>11,256,690원~</td><td>12,182,296원~</td><td>13,107,901원~</td><td>14,033,507원~</td></tr>
<tr><td>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</td><td>160% 초과, 부동산가액 (3.31억원) 충족</td><td>10,415,124원~</td><td>12,195,291원~</td><td>12,864,788원~</td><td>13,922,623원~</td><td>14,980,459원~</td><td>16,038,294원~</td></tr>
</table>
- 기준소득 :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, 부부 중 1인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%를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, 부부 중 1인 소득이 월평균 소득기준 100% 초과 시 일반공급 20%(상위소득)[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(월평균 소득기준 120% 초과~160% 이하)]을 선택하셔야 합니다.
- 상위소득 :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, 부부 중 1인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40%를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.
- 추 첨 제 : 해당 세대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(배우자 소득이 없는 경우 140%,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%)은 초과하나, 해당 세대의 부동산가액기준(3.31억원) 이하에 해당하는 자
※ 부동산 소유 현황 조회방법
- 소득기준은 초과하나, 부동산가액기준을 충족하는 조건으로 신청한 자는 본인과 세대구성원 전원의 서류를 모두 제출
- (발급기관) 대법원 인터넷등기소(www.iros.go.kr) 접속 등기열람/발급 〉 부동산 〉 "부동산 소유 현황"(소유 현황이 없는 경우에는 신청 결과)
- 발급 시 (주민)등록번호 공개에 체크
※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무주택세대 구성원 중 청약신청자(세대주) 및 성년인 자(만 19세 이상)의 합산 소득입니다.(단, 세대원의 실종·별거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표등본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산정의 대상에서 제외함)
※ 월평균소득은 연간소득÷근무월수를 말하며, 연간소득은 근로자의 경우에는 비과세소득이 제외된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상의 총급여액(21번) 및 근로 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상의 과세대상급여액을 기준으로 하고, 사업자인 경우에는 전년도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증명 원본상 과세대상급여액을 기준으로 하며, 근무월수는 근로자인 경우에는 재직증명서 상의 근무월수를, 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상의 기간을 기준으로 합니다.
※ 가구원수는 무주택세대 구성원 전원(임신 중인 태아 포함)으로 산정합니다.
</td></tr>
</table>

※ 본 안내문은 청약자격과 관련한 간단한 내용만을 요약하였으며, 편집 과정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(기재오류·미기재 사항은 관계법령에 따릅니다.)
※ 청약자격 미숙지, 착오 신청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므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IPARK 보문 센트럴 아이파크

총 199세대 중 아파트 76㎡(85세대), 81㎡(2세대)

시행 보문제5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시공 HDC 현대산업개발

1600-5727

본 자료는 청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간략하게 표현한 것으로 대표전화로 문의하시거나, 청약신청 전 입주자모집공고를 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